

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. 6. 5 -----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6. 6. 5

다. 상 정 일 자 : 2006. 6. 15

(제13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, 의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기획감사실장 황해룡)

### 가. 제안사유

「지방재정법」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(2006. 1. 1시행)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일부 정리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골자

“ 「지방재정법」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”를 “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”로 변경(안 제1조)

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, 같은법 시행령 제29조
- 입법예고 : 2006. 4. 25 ~ 5. 15(20일간) ▷ 제출의견 없음

#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의 목적이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
- 지방재정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그 근거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로 바꾸는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됨

5. 질의답변요지 : 생 략

6. 토 론 요 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